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10 선고 2019가단222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

피 고

유한회사 A

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19. 9. 19

판결 선고 2019. 10. 1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1994. 3. 15. 접수제 2346호 및같은 등기소 1996. 4. 29. 접수 4493호로 각 마친각 근저 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주류대금 등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의 결산기를정하지 아니한 채, 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. 3. 15. 접수 제2346 호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,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(그 후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. 이하 'C'라고 한다) 및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,② 같은 등기소 1996. 4. 29. 접수 4493 호로 채권최고액 50, 000, 000원,근저당권자 C,피고 및 E 주식회사(그 후 F 주식회사로합병. 이하 'E'라고 한다)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각 근저당권'이라고 하고,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'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마쳤다.

나. C는 2003. 7. 18. 피고와 공유담보물건에 대한 권리지 분분할 비율 확정합의를 하면서 2003. 5. 31. 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이 0인 거래선의 담보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권리지분을 모두 양도받기로 하였는데L 그 합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분할비율은 0%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근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 최 고액의 범위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그리고 근저당권의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(대법원2002. 2. 26. 선고 2000다48265판결 등 참조)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 결산기의 정 함이 없는 이 사건각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있다고 할 것인데,피고의 채권및이 사건각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지 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,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9. 2. 26.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

명백하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각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계훈영

별지